

#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561 호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2.

제 출 자 : 김 포 시 장

## 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## □ 개정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, 장애인, 보훈대상자,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기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
-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조성한 후 사용토록 되어 있어, 50억원의 기금이 조성 되기 전이라도 기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 당해연도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(안 제4조제3항)
- 나.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(안 제4조제4항)

## □ 개 정 조 례 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 산 수 반 상 황 : 해당없음

## □ 사 전 예 고 결 과 : 입법예고 2004.10. 4.~11. 4. 의견없음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.

④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,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중 “자치행정국장, 건설도시국장”을 “본청 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1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

2.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3. 기타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조례제362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칙 제3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		복지과
입 안 자	과장 성명	복지과장 신명철
	팀장 성명	사회복지담당 심상연
	담당자 성명(전화)	이혜진 (행정221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기금의 관리 운용) ① (생략)  ②(생략)	제4조 (기금의 관리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<u>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</u>
<u>&lt;신설&gt;</u>	<u>④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.</u>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①(생략)  ②(생략)  ③(생략)  ④ 위원은 <u>자치행정국장, 건설도시국장</u> 을 당연직으로 하고, 시의원 1인,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	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①(현행과 같음)  ②(현행과 같음)  ③(현행과 같음)  ④ ----- <u>본청 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1조 (기금결산)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심의·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11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</u></p> <p><u>2.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</u></p> <p><u>3. 기타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</u></p>
<p><u>부 칙 (2002.01.16 조례 제362호)</u></p> <p><u>제1조(생략)</u></p> <p><u>제2조(생략)</u></p> <p><u>제3조(경과조치)①(생략)</u></p> <p><u>②기금의 조성목표액 적립 완료시 까지 지원 소요액에 대하여는 김포시 생활보장기금 이입금 및 기타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부 칙 (2002.01.16 조례 제362호)</u></p> <p><u>제1조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제2조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제3조(경과조치) ①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②&lt;삭 제&gt;</u></p>

#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안 번 호	561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4년 12월 14일

제 안 자 :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광식

## 1. 수정이유

-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정비하고 간결화하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4종 제4항의 “ 10퍼센트 ” 를 “ 100분의 10 ” 으로 하고
- 제11조 제3항 “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”를 “ 다음 회계연도 7 월말까지 ” 로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를 돋고 간결화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.

##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4항 “ 10 퍼센트 ” 를 “ 100분의 10 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 제3항 “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”를 “ 다음 회계  
년도 7월말까지 ”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기금의 관리 운용) ①~② (생략) (신설)	제4조(기금의 관리 운용)①~② (현행과 같음)  ③ <u>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</u>  ④ <u>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.</u>	제4조(기금의 관리 운용)①~② (개정안과 같음)  ③(개정안과 같음)  ④----- ----- ----- 100분의 10 ----- ----- ----- -----
제11조(기금결산) <u>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시의회의 심의·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(신설)	제11조(기금결산)① <u>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  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.</u>  1.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 사항 2.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3.기타 기금 결산상 필요한 서류	제11조(기금결산)①(개정안과 같음)  ②(개정안과 같음)
(신설)	③ <u>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	③----- ----- 다음 회계년도 7월말까지 ----- -----